

변경대비표

1. 대상약관

-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 설정약관

2. 시행일 : 2017년 1월 16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4. 변경 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제 17 조(연금계좌세액공제)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(이하 “연금계좌 납입액”이라 한다)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(총 급여 5,500 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,000 만원 이하의 거주자는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)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4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,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</p>	<p>제 17 조(연금계좌세액공제)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(이하 “연금계좌 납입액”이라 한다)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(총 급여 5,500 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,000 만원 이하의 거주자는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)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4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,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</p>	<p>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항 반영</p>

<p>합한 금액이 연 7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연퇴직소득 2.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<p>②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</p>	<p>합한 금액이 연 7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,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연퇴직소득 2.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<p>②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</p>	
<p>(신설)</p>	<p><부칙>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p>	